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10.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1개 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4명(6급 2명, 7급 2명)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항공정책실에 공항 내 조류충돌 예방 등 공항환경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인력으로 재배치함(제16조제3항제53호의2, 별표2, 별표3).

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1개 국 및 2개 과를 추가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 중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2명(6급 1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공항 관리를 위한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함(별표3, 부칙 제2조).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9명, 7급 154명, 8급 70명, 9급 3명)을 각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항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명(6급 9명, 7급 18명, 8급 6명) 중 28명(6급 9명, 7급 13명, 8급 6명)을 증원하며, 5명(7급 5명)은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함(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의2, 별표3, 부칙 제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21. ~ 10.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53호 중 “검사”를 “유효성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의2. 공항운영검사 및 관리검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김포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를 각각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한다.

제53조의2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항행계획 등 항행서비스 중장기 계획의 이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공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항공교통업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용,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사항

별표 2 중 총계 “1,038”을 “1,044”로, 일반직 계 “1,028”을 “1,034”로, 3급 또는 4급 이하 “999”를 “1,005”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53”을 각각 “2,196”로, 3급 또는 4급 이하 “2,544”를 “218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9”를 “68”로, 일반직 계 “68”을 “67”로, 3급 또는 4급 이하 “65”를 “64”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교통본부	국토교통부	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기 관제 제공, 경보업무,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공역관리, 항공교통 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728명
--------	-------	--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교통본부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항공교통통제센터, 비행점검센터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항공정책실) ①·② (생략)	제16조(항공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52. (생략)	1. ~ 52. (현행과 같음)
53. 공항운영 증명 및 <u>검사</u> ,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3. ----- <u>유효성 검사</u> ----- -----
<u><신 설></u>	<u>53의2. 공항운영검사 및 관리검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54. ~ 66. (생략)	54. ~ 66. (현행과 같음)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직무)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u>	<u><삭 제></u>
3. <u>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 업무</u>	<u><삭 제></u>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6. <u>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u>	<u><삭 제></u>
7. ~ 17. (생략)	7. ~ 17.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32조(소속관서) ① ----- -----

<u>김포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u>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② <u>김포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u>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김포항공관리사무소</u> ----- -----. ② <u>김포항공관리사무소</u> ----- ----- ----- -----. 제53조의2(직무)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가항행계획 등 항행서비스 중장기 계획의 이행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u> 8. <u>계기비행절차의 설정·공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9. <u>항공교통업무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038</u>		<u>1,045</u>	+6	
	.		.		.		
	.		.		.		
일반직	계		<u>1,028</u>		<u>1,035</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99</u>		<u>1,006</u>	+6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553</u>		<u>2,196</u>		-357
일반직	계		<u>2,553</u>		<u>2,196</u>		-35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544</u>		<u>2,187</u>		-357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